제89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신설(강화) ○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▶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.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(강화) ○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,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금지 또는 제한 ○ 금지 또는 제한 위반시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,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 가능 ▶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(신설) ○ 관리그룹을 구분하고, 그룹별 관리수준을 설정, 점검결과를 토대로 관리등급을 지정하여 필수적 보수·보강 등 조치 및 관리대책 수립의무 등을 부여 ▶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전체	1.비중요
3	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(신설) ○ 정밀안전진단, 가스배관시설 건정성 관리 결과를 감안하여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대상을 선정하고,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(기술성·경제성·정책성 평가)를 거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성능개선사업을 수행 ▶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전체	1.비중요
4	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 보험회사의 비교·공시 정비(강화) ○ 보험판매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항목을 추가 ○ 보험금 지급 관련 현재 보험회사별로만 공시하도록 한 보험금 부지급률, 청구 이후 해지비율, 보험금 지급기간 등 항목을 보험회사별, 판매채널별, 보험상품별로 세분화하여 공시하도록 함 ▶ 보험업감독규정 제7-46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외화보험 모집시 준수사항 신설(신설) ㅇ 외화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모집종사자의 준수사항 신설 – 적합성 조사시 실수요 여부 확인 –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, 보험금, 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,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ㅇ 보험계약 청약 후 진행되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확대 –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외화보험 추가 –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금 변동 가능성, 해약환급금 설명 의무 부과 ▶ 보험업감독규정 제4-31조의5,제4-35조의2 3. 외화보험 자산의 특별계정 설정 · 운용 의무화(신설) ㅇ 외화보험은 일반계정 자산과 분리·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을 설정 ▶보험업감독규정 제5-6조, 제5-7조 4.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(강화) ㅇ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가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상품의 사업비 수준을 상품요약서에 공시 ▶ 보험업감독규정 제7-45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5. 최적해지율 산출기준 명시(신설) ㅇ 보험회사가 최적해지율 산출시 보험회사의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하도록 기준 마련 ㅇ 최적해지율을 보험료·보험금 산출에 적용하는 경우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 가능 ▶ 보험업감독규정 제7-75조의2	
5	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(원자력안전위원회)	1. 우주방사선 측정장비 및 평가프로그램의 기준(신설) ㅇ 항공운송사업자가 피폭방사선량 조사·분석 시 사용할 수 있는 우주방사선 측정장비의 종류, 성능시험방법 및 측정방법과 방사선 측정프로그램의 입력값과 오차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 ▶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	1.비중요
6	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여성가족부)	1.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(신설) ㅇ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· 운영 기준 및 종사자(시설장 및 상담원) 자격기준을 정함 ▶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, 제9조	1.비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기준(신설) ㅇ 지원시설의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,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및 방법 규정 ▶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	
7	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정기준 및 절차, 평가, 지정취소 절차 등 신설(신설) ㅇ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,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,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ㅇ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규정 ㅇ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규정 ▶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	1.비중요